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발전용원자로 운영 부담금 신설〉

■ 이철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860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2
IV . 검토의견	3
1. 발전용원자로 운영 부담금 신설 (안 별표)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철규의원 등 24인

나. 발 의 일 : 2024. 10. 23.

다. 회 부 일 : 2024. 10.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원전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근거를 마련하여 원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인력양성, 세제·금융지원 및 소형모듈원전 연구개발·실증, 원전수출 촉진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부과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안 별표 제97호 신설).

Ⅲ.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48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발전용원자로 운영 부담금 신설(안 별표)

현행	개정안
○ 별표(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 - <신설>	○ 별표(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 -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

부담금은 현행법 제3조¹⁾에 따라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부담금 설치에 제한을 두고 있음.

개정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4859호)의 의결을 전제로 원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용원자로 운영 부담금(이하 “발전용원자로 운영 부담금”이라 함) 설치 근거를 현행법 별표에 반영하려는 것임.

[원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용원자로 운영 부담금 관련: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8조(원전산업발전기금의 설치 등) ① 정부는 원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등에 필요한 재원을 효과적으로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원전산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3.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9조에 따른 부담금 (이하 생략)

제9조(부담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등을 위하여 「원자

1)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해당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되는 전전년도 전력량에 킬로와트시간당 2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된 매 분기별 전력량을 기재한 자료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담금의 안정적 납부를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전력거래의 정산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④ 부담금의 납부방법, 납부시기, 납부자에 대한 특례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등을 위하여 「원자력안전법」 2)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해당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되는 전전년도 전력량에 킬로와트시간당 2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부담금은 원전산업발전기금(신설)의 재원이 됨.

2) 「원자력안전법」 제20조(운영허가) 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허가기준) ① 제20조제1항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제20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5.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6.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22조(검사) ①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라 한다), 공급자 및 성능검증기관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발전용원자로 운영 부담금(안)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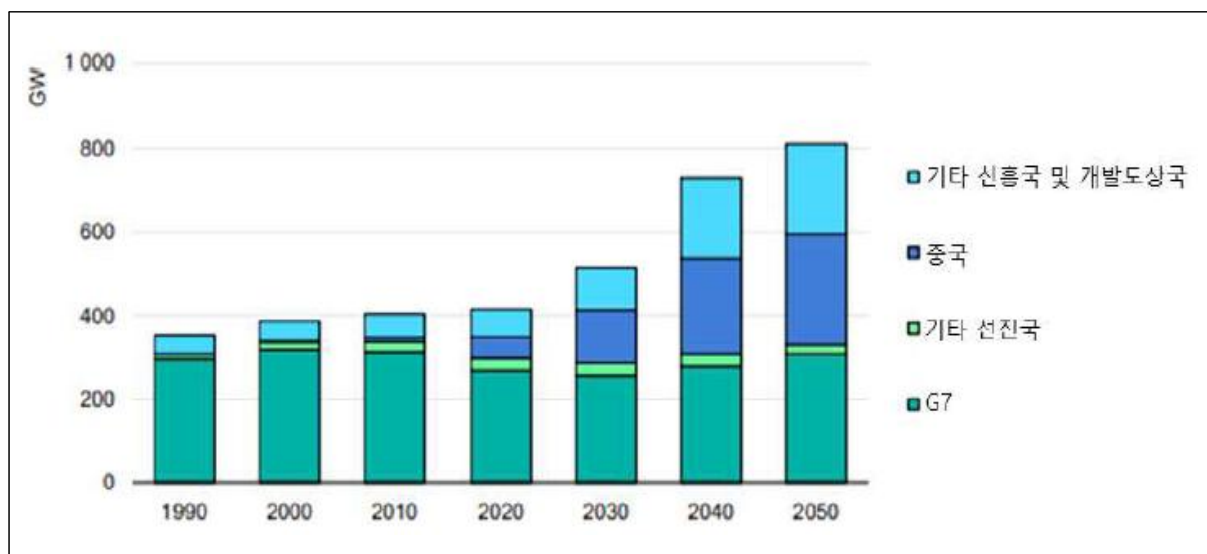
- (목적) 원전산업의 경쟁력 강화
 - (부과·징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부과대상)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운영자(한국수력원자력(주))
 - (귀속) 원전산업발전기금(신설)
 - (부과요율(한도)) 전전년도 전력량 × kWh당 2원
- * (예상 징수규모) '23년 원자력 전력발전량 180,494GWh 기준, 연간 3,610억원 수준

[원전산업발전기금(신설) 개요(「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구 분	내 용
기금의 설치 (안 제8조제1항)	원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등에 필요한 재원을 효과적으로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원전산업발전기금을 설치
기금의 재원 (안 제8조제2항)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3.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9조에 따른 부담금 5. 에너지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기금의 운영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기금의 용도 (안 제8조제3항)	1. 기술개발 및 활용 촉진 지원 2. 공급망 안정화 지원 3. 금융 및 세제지원 등 4. 투자 활성화 지원 5.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소형모듈원전의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 지원 7.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의 지원 8. 소형모듈원전의 활용 지원 9. 소형모듈원전의 국제동향조사 및 정책개발 지원 10. 원전수출사업자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 11. 원전수출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컨설팅 지원 12. 원전수출사업자의 보조 및 융자 지원 13.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된 기관에 대한 지원 14. 기금의 조성 및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최근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음.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 안보 우려 및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원전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으며, '2050 넷제로(Net Zero)³⁾' 달성을 위해 향후 재생에너지가 90%까지 확대되어야 하는데, 기상상황 등에 따라 발전량이 변하는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⁴⁾ 원자력발전 설비도 2050년까지 현재보다 약 2배(2022년 413GW → 2050년 812GW)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하였음⁵⁾.

[2050 IEA 넷제로(Net-Zero) 시나리오의 지역별 원전 설비 전망]



자료: 한전 경영연구원, 국제에너지기구(IEA)

특히, 제47대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원전산업 확대를 표명하면서 원자력규제위원회(NRC) 현대화와 소형모듈원자로(SMR:

3)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인 상태인 "탄소제로" 혹은 "탄소중립"상태로 만드는 것

4)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기존 화력발전이 전력계통에 기여해 오던 수요피크 안전성, 단기 유연성, 용량 제공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한 다양한 운전능력 보완이 필요함(자료: 넷제로를 위한 원전의 역할과 과제, IEA, 한전 경영연구원, 2022.7.)

5) 원자력과 안정성 있는 에너지 전환(Nuclear Power and Secure Energy Transitions) 보고서(IEA, 2022.6)

Small Modular Reactor) 기술에 대한 투자 등을 공약하는 등 원전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임을 볼 때, 우리나라의 원전 시공, 운영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SMR 수출 등의 협력 등 원전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⁶⁾

이러한 상황에서 원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인력양성, 세제·금융지원 및 소형모듈원전(SMR) 연구개발·실증, 원전수출 촉진 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부담금을 신설하는 개정안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부담금은 국민에게 납세의무 외에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이므로, 부담금을 도입하려는 경우 도입 여부가 타당한지 엄격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⁷⁾.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6조⁸⁾에서는 무분별한 부담금의 신설이나 증설을 억제하기

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국 트럼프 2.0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2024.11.7.)

세계일보, “트럼프 귀환에 석유·원전도 ‘웃음’… 국내 원전·조선업계 영향은”(2021.11.9.) 등

7)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5, p.451

8)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6조(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축소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 인상·인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부담금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받으면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제9조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할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2. 부담금의 부과요건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부담금의 재원 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각각 갖추었을 것

4. 기존의 부담금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5. 부담금의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할 것

6. 부담금의 존속기한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을 것.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이 같은 항 각 호의 기

위하여 정부에서 부담금의 신설을 추진하는 경우 ① 부담금 신설 목적의 명확성, ② 부담금 부과요건의 구체성 및 명확성, ③ 부담금 재원 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 ④ 기존 부담금과의 중복 여부, ⑤ 부담금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한지 여부, ⑥ 부담금 존속기한의 적절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국회에서 부담금 신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담금을 신설하는 경우와는 달리 이러한 타당성 심사 절차에 구속된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부담금 필요성의 판단 기준으로 참고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부담금 신설 목적의 명확성 측면에서 보면, 개정안에서 신설하려는 발전용원자로 운영 부담금이 원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세제·금융지원 및 소형모듈원전 연구개발·실증, 원전수출 촉진 등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신설 목적이 명확한 것으로 보임.

둘째, 부담금 부과요건의 구체성 및 명확성 측면에서 보면⁹⁾, 개정안의 전제가 되는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부담금 징수대상은

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9)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부담금의 부과요건등)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과요율의 경우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되는 전전년도 전력량에 킬로와트시간(kWh)당 2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부과되므로 구체성 및 명확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임¹⁰⁾.

셋째, 부담금 재원 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 측면에서 보면, 징수된 발전용원자로 운영 부담금은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상 원전산업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되어 기술개발, 인력양성, 세제·금융지원 및 소형모듈원전 연구개발·실증, 원전수출 촉진 등에 사용될 예정으로 부담금 부과 및 사용을 통하여 원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은 어느 정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임.

넷째, 기존 부담금과의 중복성 측면에서 보면, 현행법 별표 제58호의 「원자력 진흥법」 제13조11)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 사업을 위한 부담금

10) 해당 조항은 「원자력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부담금과 유사하게 규정됨.

11) 「원자력 진흥법」 제13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의 부담)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해당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되는 전전년도 전력량에 킬로와트시간당 1.2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된 매 분기별 전력량을 기재한 자료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⑤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부담금을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에 납부하여야 한다.

과 부과대상이 동일한데 사용용도에 있어서도 유사한 측면이 있어 보임.

[발전용원자로 운영 부담금(안)과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부담금 비교]

구분	발전용원자로 운영 부담금(안)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부담금
근거법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원자력 진흥법
사용목적	원전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재원마련
부과권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부과대상	「원자력 안전법」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운영자	
귀속	원전산업발전기금(신설)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부과요율 (한도)	전전년도 전력량 × kWh당 2원	전전년도 전력량 × kWh당 1.2원
사용용도	① 기술개발 및 활용 촉진 지원 ② 공급망 안정화 지원 ③ 금융 및 세제지원 등 ④ 투자 활성화 지원 ⑤ 전문인력 양성 지원 ⑥ 소형모듈원전의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 지원 ⑦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의 지원 ⑧ 소형모듈원전의 활용 지원 ⑨ 소형모듈원전의 국제동향조사 및 정책개발 지원 ⑩ 원전수출사업자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 ⑪ 원전수출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컨설팅 지원 ⑫ 원전수출사업자의 보조 및 융자 지원 ⑬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된 기관에 대한 지원 ⑭ 기금의 조성과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	<원자력연구개발계정> ① 원자력연구개발사업 ② 연구개발 기자재 및 장비지원사업 ③ 원자력관련 인력양성 등 <원자력안전규제계정> ①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4에 따른 용도(원자력 안전관리 및 방사능 방재 등)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운영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기존의 원자력연구개발 사업을 위한 부담금과 부과대상 및 사용용도가

⑥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부 중복되어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¹²⁾에 따른 부담금의 이중 부과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어 보임.

참고로,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현재 납부 중인 부담금은 연간 1조원 수준임.

[2023년 기준 발전용원자로운영자(한수원) 징수 부담금]

별 표	부담금명	근거법	소관 부처	부과목적	징수액 (억원)
34 호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산업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중 사용후핵연료 관리사업 수행 재원 확보	7,878
57 호	원자력안전관리 부담금	원자력안전법	원안위	방사선재해 방지 및 공공 안 전 도모, 물리적방호체계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계 수립 재원 확보	996
58 호	원자력연구개발 사업 비용부담금	원자력 진흥법	과기부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 수 립·추진 위한 재원 확보	1,896
합 계					10,770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및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등

다섯째, 부담금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수입을 목적으로 일반국민 또는 주민에게 담세능력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반면,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해당 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사업소요 경비, 사업과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부과한다는 점에서¹³⁾ 동 사안의 경우 조세보다는 부담금의 부과가 적절한 것으로 보임.

12)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부담금 부과 원칙) ① 부담금은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13)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5, p.451

여섯째, 부담금 존속기한의 적절성 측면에서 보면¹⁴⁾, 원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존속기한을 설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한편, 헌법재판소는 부담금의 정당화 요건으로 ① 부담금 의무자들이 일반인과 구별되고 동질성을 지니는 특정집단일 것(집단적 동질성), ② 부담금의 부과를 통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특정한 경제적·사회적 과제와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객관적 근접성), ③ 그러한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조세 외적 부담을 질 만한 집단적인 책임이 인정되는 집단에 대해서만 부과될 것(집단적 책임성), ④ 부담금의 수입이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될 것(집단적 효용성)¹⁵⁾을 제시하고 있음¹⁶⁾.

이러한 요건에 비추어볼 때 부과대상인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집단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며, 원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인력 양성, 세제·금융지원 및 소형모듈원전 연구개발·실증, 원전수출 촉진 등을 위하여 해당 사업과 관계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인 만큼,

14)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부담금 존속기한의 설정) ①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그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부담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15) 다만, 헌법재판소는 ‘정책실현목적의 부담금’에 대하여 부담금의 부과가 정당한 사회적·경제적 정책목적을 실현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이유가 되므로, 과제의 수행에 대한 납부의무자 집단의 특별한 재정책임과 납부의무자 집단에 대한 부담금의 사용 여부 등은 결정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보고 있음(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2헌바42 결정).

16) 헌법재판소 1999. 10. 21. 선고 97헌바84 결정, 1998. 12. 24. 선고 98헌가1 결정, 2004. 7. 15.선고 2002헌바42 결정 등

발전용원자로 운영 부담금은 집단적 동질성, 객관적 근접성 및 집단적 책임성의 요건은 어느 정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임.¹⁷⁾¹⁸⁾

한편, 본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인 「원전 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48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동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17)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2024년 3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한 후 후속 조치로서 국민·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부담금을 폐지·감면하는 부담금 정비를 추진 중인 만큼 부담금의 신설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한국수력원자력이 현재 납부 중인 부담금도 연 1조원 수준인 만큼 부담금 추가로 인한 원전 발전단가 상승 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협력업체 유동성 공급,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한국수력원자력의 자체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고려 시 별도의 부담금 신설 필요성이 낮아보인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8)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재원을 효과적으로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기금 및 부담금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u><신 설></u>	별표 <u>97.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u>

문의처
02)6788-5153

